의 역	간 번	호	제	ই
의		결	2023.	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야 생 생 물 보 호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의결주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

야생동물 수출·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규정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088호, 2022.12.13. 공포, 2023.12.14. 시행)됨에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이외 권한의 위임, 업무의 위탁 근거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3. 주요내용

가. "관계 행정기관,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(안 제6조)

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(야생생물법 제6조의2)됨에 따라 제공 요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나.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(안 제7조)
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,

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

다.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(안 제35조)

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,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('22.6.27., 행안부,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)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

라.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(안 제39조의2)

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 (ASF 등) 대응 업무, 야생동물 충돌·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

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# 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#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2(제공정보의 요청) 법 제6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- 1. 법 제19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 한 정보
- 2.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·수입·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
- 3. 법 제22조의4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및 신고, 양도·양수·보관·폐사 신고에 관한 정보
- 4.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
- 5.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 보

제7조제1항제2호 중 "야생동물"을 "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액과 야생동물"로 한다.

제35조제1호 중 "사망·부상하게 한 경우: 1억원"을 "사망하게 한 경우: 1.5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다른 사람의"를 "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(이 하 "후유장애"라 한다)가 생긴 경우: 1억5천만원 이상
-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 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 에게 위임한다.

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로 하고,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9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.
  -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실태 정밀조사
  - 2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
  - 3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·추락 등의 야생 동물 피해 실태조사
  - 4.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·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·운영

- 5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멸종위 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조사
-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환경 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.
- 1.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유지·관리
- 2. 법 제34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에 관한 조사연구, 국제교류 및 교육·홍보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관 한 업무

별표 2 제2호에 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호. 법률 제189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법률 제18908	150	200	300
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호 야생생물 보			(4차 이
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「동물 호 및 관리에			(4/) )
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관한 법률 일부			상 위
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개정법률 부칙			반시 5
경우 제3조제2항			4.10
			00)

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2(제공정보의 요청) 법 제
	6조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정보"란 다음 각 호의 어
	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
	<u>한다.</u>
	<u>1. 법 제19조에 따른 야생생물</u>
	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 및
	신고에 관한 정보
	<u>2.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</u>
	의 수출・수입・반출 또는
	<u>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</u>
	3. 법 제22조의4에 따른 지정관
	리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및
	신고, 양도・양수・보관・폐
	사 신고에 관한 정보
	4.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
	허가에 관한 정보
	5.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
	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
	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
	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
	의하여 정하는 정보
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	제7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

기준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(생략)
- 2. 피해보상기준: <u>야생동물</u>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·임 산물·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
- ② · ③ (생 략)
- 제35조(보험 가입)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 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.
  - 1.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<u>사망</u>
    ·부상하게 한 경우: 1억원 이
    상
  - 2. 수렵 중에 <u>다른 사람의</u> 재산 에 손해를 입힌 <u>경우: 3천만원</u> 이상

기순 및 절차 능) ①
1. (현행과 같음)
2 <u>야생동물로 인</u>
한 인명피해액과 야생동물
<u> 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5조(보험 가입)
  1 <u>사망</u>
1 <u>사망</u>
1 <u>사망</u> <u>하게 한 경우 : 1억 5천만원</u> - 
1 사망      하게 한 경우 : 1억 5천만원 -         2 다른 사람을 부상하
1 <u>사망</u> <u>하게 한 경우 : 1억 5천만원</u> - 
1 사망      하게 한 경우 : 1억 5천만원 -         2 다른 사람을 부상하

<신 설>

제39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③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3.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 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(이하 "후유장 애"라 한다)가 생긴 경우: 1억 5천만원 이상
- 제39조(권한의 위임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
  -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제6조의3제1항에 따 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 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.
- 제39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환경 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국립 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 탁한다.
  -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실태 정밀조사
  - 2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 <u>종 조사</u>
  - 3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

공구조물로 인한 충돌·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4.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 기·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·우영

- 5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현황 및 생태적 특성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.
- 1.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유지·관리
- 2. 법 제34조의12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에 관한 조사연구,국제교류 및 교육·홍보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과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

<u>제39조의3</u> · <u>제39조의4</u> (현행 제39 조의2 및 제39조의3과 같음)

<u>제39조의2</u> · <u>제39조의3</u> (생 략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생물다양성과

연 락 처

 $(044) \ 201 - 7243$